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탁기업의 약정갱신요구권, 수탁기업협회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및 수탁·위탁거래감독관 신설 등〉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03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신고 의무화	3
2. 수탁기업협의회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부여 등	5
3. 수탁기업에 약정갱신요구권 부여	10
4. 수탁기업협의회 구성·가입·활동 관련 불이익 행위 등 금지	15
5. 수탁·위탁거래감독관 설치 등	17
※ 참고자료	22
1. 2023년 수탁기업협의회 개요	22
2. 가맹거래와 수탁·위탁거래 간 비교	23
3. 2023년 수탁기업협의회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24
4. 수탁·위탁거래 조사 관련 공무원 현황	25
5. 제도 비교(근로감독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2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31.
3. 회부연월일 : 2024. 11. 1.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인 위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위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협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위탁기업협의회가 위탁기업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인 수탁·위탁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수탁기업에 약정 갱신 요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인력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탁기업협회의 거래조건 협의 권한 및 수탁기업의 약정 갱신 요구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위탁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둬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수탁기업협의회가 구성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조정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수탁기업협의회가 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 등은 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라. 계속적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이 약정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마. 중소벤처기업부에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을 두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IV. 검토의견

1.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신고 의무화

개정안은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생략) <u><신설></u>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신설></u> <u>②·③ (생략)</u>	<u>③ ~ ⑥ (생략)</u> <u>⑦·⑧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u>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 교환이나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

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¹⁾,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 제17조제2항은 수탁기업의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이나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안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수탁기업협의회에 부여하기 위하여 수탁기업협의회의 설립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별도의 구성요건이나 제한 없이 지원 규정²⁾만을 두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수탁기업협의회의 결성을 지연시키거나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수탁기업협의회 신고제도는 수탁기업체협의회³⁾로 운영되던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수탁기업협의회에 별도의 예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당시 폐지(1999년)되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 헌법상 단체 결성의 자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자단체 설립신고 조항을 삭제(1999년)한 바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⁴⁾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경우에도 단체 구성시 별도의 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아울러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신고제 도입과 관련하여 유사한 취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511호)이 계류 중이므로, 이를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수탁기업협의회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부여 등

개정안은 수탁기업협의회가 구성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의 조정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위탁기업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생략) <신설> <신설>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수탁기업협의회는 구성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조정 등 거래조건(이하 이

3)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으로, 동 법률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06.3.3.)으로 폐지됨.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⑤ 수탁기업협의회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산 활동을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⑦·⑧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개정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단체에 부여된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⁵⁾과 같이 수탁기업협의회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

에도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현행법 제17조제1항6)에 규정된 수탁기업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개별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임.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계약 내용의 차이가 크지 않아 특정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은 대표성을 가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대신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을 보완하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음.

반면, 수탁·위탁거래의 경우 동일한 위탁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일지라도 수탁의 내용, 업종, 기업규모 및 기술수준 등이 모두 다를 수 있어 거래별 조건도 다르게 적용되며, 이에 따라 수탁기업 협의회에 속한 수탁기업들의 이해관계 역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함.

(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수탁기업협의회가 특정 위탁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으로 구성되었을지라도 모든 수탁기업의 대표로서 거래조건을 협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1] 수탁기업협의회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비교

구분	상생협력법	가맹사업법
단체 구성목적	(수탁기업협의회) ·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 유지, 기술정보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 촉진을 위해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구성	(가맹점사업자단체) ·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
단체권한 등	· 법률상 부여된 별도 권한 없음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가능)	· 가맹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 단체 우선, 가맹본부의 성실 협의 의무 규정
의무이행 확보수단	-	· 성실협의 의무 미이행에 대한 별도 제재조치 미규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에 별다른 조건이나 제한 없이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적용하게 되면 계약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수탁기업마다 거래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탁기업협의회가 거래조건을 협의할 만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친목단체 및 임의단체의 성격이 강한 수탁기업협의회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 또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⁷⁾를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수탁기업협의회는 수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다양한 형태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동일 수탁기업협의회에 소속된 기업 간에도 업종, 제품, 규격 및 품질 등이 다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 등 거래조건 협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수탁기업이 생산하는 중간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 및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수탁기업협의회가 다수 수탁기업의 거래조건을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것은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성담합이 될 수 있어 시장경제질서에 반할 수 있고, 최근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회의 요건을 간소화하도록 법령 개정이 완료⁸⁾되었으므로 현행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511호)에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수탁기업협의회는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하여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조정에 관한 대행협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요건을 삭제함(법률 제19989호, 2024. 1. 9. 개정 및 시행, 대통령령 제34606호, 2024. 6. 25., 개정 및 시행).

3. 수탁기업에 약정갱신 요구권 부여

개정안은 계속적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약정 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15일 이내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약정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약정 조건의 변경이나 갱신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정과 같은 조건으로 약정이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1조의4(약정의 갱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속적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 기간의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약정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수탁기업이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u> <u>2. 다른 수탁기업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약정조건을 수탁기업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u> <u>3.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u>

현행	개정안
	4.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탁기업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위탁기업이 제1항에 따른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탁기업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이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약정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수탁기업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약정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만료 전의 약정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기업이 약정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제21조의4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된 계약갱신 요구권⁹⁾을 현행법의 수탁·위탁거래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에도 도입하려는 것임.

가맹사업은 메뉴, 기술, 홍보 등 사업 영위에 중요한 사항들을 가맹본부가 기획·개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교육·지원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는 통제 또는 상당한 수준의 위계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¹⁰⁾. 따라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가맹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들은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로 해당 산업특성에 정통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는 불가피하게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가맹사업의 본질적인 특징인 표준화(標準化)로 인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상시적인 지시와 감독이 가맹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포함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게 됨.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2. 5. 13.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에는 상법(商法)의 상행위편에 가맹사업에 관한 5개의 조문이 신설되었으며, 2013. 8. 13.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결성권 및 단체협상권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권오성,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20집 제3호, 2018.9, p315).

업의 특성에 기반하여 영세 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수탁기업에 약정갱신 요구권을 부여한다면, 수탁기업은 수탁·위탁 거래 중단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물품등의 품질 유지 등이 용이할 수 있음. 일부 업종의 경우 특정 위탁기업과의 수탁·위탁거래 중단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관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처럼 상당한 위계적 관계의 형태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수 있음.

다만, 가맹사업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고, 가맹본부와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갱신이 새로운 가맹점사업자의 진출 및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영업활동 등의 사항에 대한 교육·지원 및 통제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

반면, 수탁·위탁거래는 위탁기업의 사정에 따라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거래의 종류나 규모가 한정되어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위탁기업은 해당 거래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 기업을 선택하여 약정을 체결하게 되고, 위탁기업과 특정 수탁기업의 약정은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수탁기업의 진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수탁기업의 거래상 지위가 위탁기업보다 불리할 수는 있으나 수

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약정과 별개로 경영 및 영업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가맹사업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반의 사항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2] 수탁·위탁거래 및 가맹사업 비교

구분	상생협력법	가맹사업법
거래(사업) 형태 및 성격	(수탁·위탁거래) ·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 공사, 용역 등을 수탁기업에게 위탁함 · 수탁기업이 독자적으로 경영 및 영업활동 수행 · 위탁기업이 기술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업과 거래	(가맹사업)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상표, 상호 등)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 영업 방침에 따라 상품, 용역을 판매함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 1차적으로 가맹본부의 영업방식 및 성과가 사업에 큰 영향
대상	(수탁기업) · 규모 및 업종이 다양하고, 거래 상황에 따라 약정내용이 상이 · 약정갱신 요구권 없음(개별 약정으로 체결·갱신)	(가맹점사업자) ·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 범위 내 계약갱신 요구권 부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재정리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속계약을 맺고 있는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거래의 형태, 내용, 규모나 업종이 다양한 수탁·위탁거래에 일률적으로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발주를 중단하는 등 약정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률 조항¹¹⁾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계약갱신 요구는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기간 제한 없는 약정갱신 요구권을 적용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기존 수탁기업과의 거래가 고착화되면 다른 신규 사업자의 시장참여가 제한되어 부적절하며, 수탁·위탁거래보다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하도급 거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도입된 바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511호)에서도 수탁기업의 약정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4. 수탁기업협의회 구성·가입·활동 관련 불이익 행위 등 금지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4호다목 신설).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현행	개정안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 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3의2. (생략)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나.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25조(준수사항) ① ----- ----- ----- -----. 1. ~ 13의2. (현행과 같음) 14. ----- ----- ----- ----- 가·나. (생략) <u>다.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회의 구성·가입·활동</u> ② ~ ④ (현행과 같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 요청(제2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또는 미가입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제5항)하고 있음¹²⁾.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에 적용되는 금지조항을 위탁기업에도 유사하게 도입하려는 것으로, 수탁기업협회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경우와 같이 수탁기업협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업협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참고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511호)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위탁기업의 불이익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5. 수탁·위탁거래감독관 설치 등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을 두고,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 ----- ----- -----.

현행	개정안
1. ~ 13의2. (생략)	1. ~ 13의2. (현행과 같음)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14. ----- ----- ----- ----- 가.----- ----- ---기관 또는 제27조의2에 따른 수탁·위탁거래감독관에게-----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나·다. (생략)	나·다. (생략)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27조의2(수탁·위탁거래감독관)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 기관에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을 둔다. ②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수탁·위탁거래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의 자격, 임

현행	개정안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4. (생략)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 ----- -----수탁·위탁거래감독관----- ----- ----- -----.
② ~ ④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① · ②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1. 제24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③ ----- ----- -----.
1의2. ~ 4. (생략)	1. 제24조의4 또는 제27조의2제2항----- ----- 1의2.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에 따라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이 설치될 경우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공식적인 직위가 생기는 것이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의 업무 영역

보다 현행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조사 대상의 범위가 넓으므로¹³⁾, 안 제40조와 같이 조사 수행주체를 소속 공무원에서 수탁·위탁거래감독관으로 일괄하여 변경하기보다는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수탁·위탁거래감독관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⁴⁾.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수탁·위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참고자료 4)와 수탁·위탁거래 감독관의 역할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을 수탁·위탁거래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¹⁵⁾. 또한,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의 조사대

13) 개정안은 현행법 제27조제1항에서 열거한 규정에 대한 위탁기업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을 설치하려는 것이나, 현행법 제40조제1항의 조사는 제27조제1항에서 열거한 규정 외에도 위탁기업의 의무 이행사항(현행법 제24조 및 제25조제4항),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3.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4) 예를 들어, “소속 공무원(제4장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수탁·위탁거래감독관)”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수탁·위탁거래감독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인바, 해당 의견이 반영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이 포함되어 별도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15)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수탁·위탁거래감독관으로 지정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형법」에서 이미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엄수 의무 및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7조의2제2항(비밀엄수) 및 제41조제3항제1호(벌칙)는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보임.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형법」

상 범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수탁·위탁거래에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27조의2제1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67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참고자료】

1

2023년 수탁기업협의회 개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개념

-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이 구성하는 단체

<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에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법적 성격

- **사업자단체**(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한 결합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

<주요 사업자단체의 종류와 관련 법 규정>

종류	관련 법 규정	근거 법률
가맹점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의 구성 권한, 거래조건 협의권 보장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단체	대통령령에 따라 공정위에 등록 가능	전자상거래법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설립 절차(국토부장관 인가) 및 형태(법인성)를 규정	건설기계관리법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가맹거래	수·위탁거래
거래(사업) 형태 및 성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상표, 상호 등)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 영업방침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 공사, 용역 등을 수탁기업에게 위탁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 상당한 수준의 위계적 관계 존재	수탁기업이 독자적으로 경영 및 영업 활동 수행
	1차적으로 가맹본부의 영업방식 및 성과가 사업에 큰 영향	기술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위탁기업의 사업성과에 영향
수탁기업·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	수탁기업은 규모 및 업종이 다양
계약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내용이 대부분 동일 유사 -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 범위 내 계약 갱신요구권 부여	- 수탁기업별로 거래상황이 달라 약정내용이 상이 - 거래갱신요구권 없음(개별 약정으로 체결·갱신)
사업자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계약 내용의 차이가 크지 않아 특정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여지가 높으므로, 대표성을 가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대신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보완 가능	동일한 위탁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일지라도 위탁의 내용, 업종, 기업규모 및 기술수준 등이 모두 다를 수 있어 거래별 조건도 다르게 적용되며, 이에 따라 수탁기업협의회에 속한 수탁기업들의 이해관계 역시 일치하기 어려움 → 수탁기업협의회가 특정 위탁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으로 구성되었을지라도 모든 수탁기업의 대표로서 거래조건을 협의하기 곤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조사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근거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매년 수탁기업협의회 운영현황을 조사
- (조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조사기간) '23.11.1 ~ '23.12.7
- (조사대상) 수탁기업협의회 회장사 및 사무국(표본 수: 87개)

□ 수탁기업협의회 수

- 수탁기업협의회 수는 '19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3년 기준 87개

<연도별 수탁기업협의회 수>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협의회 수	302	353	460	550	550	195	152	109	87

* 수탁기업협의회 실태조사에 응답으로 실체가 확인된 단체

□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 수

- '23년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 수는 총 3,435개, 평균 40.9개사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 수>

0~5개사	6~10개사	11~50개사	51~100개사	101개사 이상
26.4%	21.8%	23.0%	12.6%	12.6%

□ 수탁기업협의회 구성범위

- '1차 협력사만으로 구성'이 51.7%로 가장 높았음

<수탁기업협의회 구성범위>

1차 협력사만으로 구성	1·2차 협력사 포함하여 구성	2차 협력사만으로 구성	1·2·3차 협력사 포함하여 구성
51.7%	27.6%	6.9%	13.8%

4

수탁·위탁거래 조사 관련 공무원 현황('24.11.30 기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상생협력법 제40조에 따른 조사 담당 “소속 공무원” 현황

구분	지역	조사 인력	비고
합계		46	
본부	소계	8	
	불공정거래개선과	5	
	기술보호과	3	과장 제외
지방청		38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3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경북	2	
	경북북부사무소	2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	2	
	전남동부사무소	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	3	
	경기북부사무소	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2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3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서	2	
	강원영동사무소	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2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3	

※ 지방청 조사인력은 조사전담은 아님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및 관련 법령)

□ 근로감독관

- 근로 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 감독관을 두며(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근로기준법 제102조제1항)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 근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 감독관 등)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직권 조사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80조제1항), 법률 시행에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 가능(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 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 및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술 청취 가능(공정거래법 제81조제3항)